

【논문】

인식 정당성의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 해 환

【주제분류】 분석철학, 인식론

【주요어】 정당화 이론, 인식 정당성, 인식적 의무, 믿음의 비의지성, 외재론, 이병덕, 임일환

【요약문】 이 글은 ‘인식 정당성’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병덕과 임일환의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인식적 의무의 준수가 진리연관적이지 않다는 점과 믿음의 생성과 소멸을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두 개의 주요한 반론이다. 이 글에서는 의무와 진리연관성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듯 보이는 이병덕의 시도와 약한 인식적 의무를 주장하는 임일환의 입장이 모두 여전히 이 반론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논증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 정당성에 관한 소위 ‘포기할 수 없는 직관’으로 알려진 것의 근원들을 재검토해 본다면, 지식의 규범성이 반드시 의무 개념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출발하여 필자는 인식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한 방향을 제안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믿음은 그 생성의 국면과 유지의 국면을 구별할 수 있는데, 진리연관성의 확보와 우연성의 배제를 위해 이 두 국면이 모두 평가될 필요가 있고, 이 두 국면에서 모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지식을 위해 필요하다. 믿음의 생성 국면은 기존의 정당화에 대한 신빙성 이론의 제안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리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지 국면의 적절성을 외재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의무론적 이해의 옹호자들이 지식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통찰은 존중하되 그것이 ‘인식적 의무’와 같은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외재론적 틀 내에서 내재론의 착안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시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인식 정당성’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최근의 국내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로부터 나아가 이러한 의무론적 이해의 옹호자들이 지식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그 통찰은 존중하되 그것이 ‘인식적 의무’와 같은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인식 정당성의 성격 규정에 대한 현대의 논의는 흔히 내재론과 외재론 간의 논쟁으로 이해된다. 각각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지금껏 제시된 논변들과 사례들은 적지 않고, 그런 만큼 양측은 모두 존중받을만한 근거와 직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킬만한 것은 아니었기에 현재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중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겠다. 최순옥은 이런 상황에 이른 이유에 대해, 알스톤(W. Alston)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기준의 적절성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어떤 방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상황의 균형추를 어느 한 쪽으로 기울게 할 결정적인 논변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 정당성에 관한 소위 ‘포기할 수 없는 직관’으로 알려진 것의 근원들을 재검토해 보고, 궁극적으로 지식의 분석에서 인식 정당성의 역할 및 필요성을 재고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지식의 규범성이 반드시 의무 개념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 작업이 내·외재론의 ‘타협되지 않는 서로 다른 차

1) 최순옥(2002),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철학연구』 제81집, p. 273. 이 논문은 이러한 두 진영 간의 물러서지 않는 교착 상태에 주목하고, 정당화가 지식의 필수조건인지를 묻는 것을 포함하여 인식 정당성을 보다 거시적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

안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의 가능성(궁극적으로는 외재론의 틀 안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을 타진해 보는 시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이병덕이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의무론적 정당성 개념의 옹호를 표방하고 있다.²⁾ 임일환도, 비록 이병덕의 입장을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성 개념의 의무론적 이해는 전제로 하면서, 다만 의무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제안하는 ‘약한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의무론에 대해 제기되어 온 주요한 반론인 믿음 생성의 비자발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³⁾ 이 두 학자들 이전에도,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표준적인 반론을 제시한 알스톤의 입장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한상기의 논문도, 여전히 의무론적 이해를 포기할 이유는 없음을 그 결론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때⁴⁾ 외재론의 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식론자들은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이 가진 매력을 여전히 높이 사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이 과연 의무론에 대해 제기되었던 기존의 반론들에 적절히 답하고 있는가? 특히 최근의 이병덕과 임일환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내·외재론의 교착 상황에서, 기존의 반론들을 의식하고 개진된 입장 들임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반론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논변들이 제시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는 이들의 입장에서 의무론적 이해를 새삼 설득력 있게 옹호할만한 새로운 근거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
- 2) 이병덕(2010), “인식적 정당화의 의무론적 규범성,” 『철학』 102집, 한국철학회, 이병덕(2013), “약한 인식적 의무론과 믿음의 비의지성 문제,” 『철학』 114집, 한국철학회
 3) 임일환(2012),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두 가지 의무론적 이해와 비의지성 반론,” 『철학연구』 46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4) 한상기(1998),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개념,” 『철학』 56집, 한국철학회

II. 믿음의 비자발성과 진리연관성 없는 정당성: 사례

다음과 같은 가상의 사례를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여러 종류의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철수는 사실과 다른 많은 것들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지극히 정상적인 지각 경험과 그에 따른 지각 믿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철수의 망상 중의 하나는,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들의 머릿속에 시신경의 정상 작동을 교란하는 특별한 종양을 자라게 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대상이 붉게 보이는 경험을 할 뿐이지, 실제로 세상에는 붉은 색 대상이란 없다는 것이다. 철수는 이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 암호의 형태로 숨겨져 있는 외계인 메시지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철수의 망상 중 하나인 것은 물론이다. 철수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붉은 색의 사물, 예를 들어 한 알의 잘 익은 딸기를 붉게 지각한다. 다만 그는 자신의 믿음 체계에 견주어, 그 때마다 그 대상은 붉은 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 색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면 그는 ‘이 대상은 붉다’라는 믿음 대신 ‘이 대상은 붉지 않다’는 믿음을 형성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철수는 이제 붉은 대상이 자신의 시각장에 들어오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저 대상은 붉지 않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철수는 출근길에 고장으로 통제력을 잃은 소방차가 굉음을 내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는데, 너무도 놀란 나머지 잠시 동안 자신의 시각장을 붉은 색으로 꽉 채웠던 그 자동차의 색깔이 붉은 색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철수는 존재하지도 않는 색을 띤 자동차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 때 그 자동차는 붉은 색이 아니었다고 정정하여 믿기 시작했다.

이 예는, 필자가 인식 정당성 논의에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플란팅가에서 유래된 예)를 변형한 것이다. 그 요소들 중 하나는 믿음 생성의 비자발성과 관련된 사실이다. 대개의 믿음은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지각적 믿음은) 인식 주체의

5) Plantinga, A.(1993), *Warrant: The Current Debate*, Oxford University Press, p. 45.

의지적 통제를 벗어나서 생성될 수 있다. 철수의 붉은 소방차에 대한 믿음이 그 예이다. 사실 철수의 ‘대상은 붉지 않다’는 믿음들도, 엄밀한 의미로 철수의 의지로 생성된 믿음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들을 조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에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인식 주체가 믿음의 생성과 소멸을 간접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을지도 모른다. 철수가 믿음을 ‘정정’하였다는 것은, 그 믿음을 골라 의지의 작동을 통해 그것을 제거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붉은 소방차 믿음이 가진 ‘불합리성’에 주목하자 그 믿음이 비의지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후반부 논의에서 이러한 간접 통제 가능성이 함축하는 바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인식 주체가 가진 믿음 체계의 내적 정합성이 어떠한 인식적 가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붉은 색 대상에 대한 철수의 ‘그것은 붉지 않다’는 믿음은 거짓이며 따라서 당연히 지식의 후보로서는 결격이다. 하지만 철수 자신은, 그렇게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혹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인식 주체에게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에 견주어 볼 때 그렇게 믿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 믿음이다라도 위의 예에서와 같이 그 증거라는 것들이 세상의 참 모습과 현격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 그러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믿음이 지식의 후보가 될 만한 참인 믿음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자신의 주관적 증거들에 견주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믿음의 인식적 가치와 지위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임은 많은 일상적 경우들(편견, 착각 등이 개입하는 경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현대 인식론 논의가 만들어 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일반적으로 인식 주체가 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즉 자신이 가진 주관적인 증거와의 합치 여부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인식론에서 중요하게 요청되는 소위 믿음의 ‘진리연관성(truth-conduciveness)’을 확보해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인식적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자신이

6) ‘고립의 문제(isolation problem)’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외계와 단절된 채 ‘매트릭스’나 ‘악령’에 의해 정합적인 인식체계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들로 대표될 수 있다.

가진 증거와의 합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이 이 예에서 주목할 세 번째 지점이다. 이 예에서 그것은 철수가 잠시 가지게 되었던 붉은 소방차에 대한 참인 믿음의 인식적 지위를 고려할 때 드러난다. 비록 정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수의 이 믿음은 정상적인 지각적 믿음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붉은 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지만(플란팅가 역시 이 예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반하는 믿음이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다른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비록 진리연관성을 확보한 참인 믿음이라 하더라도, 인식 주체의 내적 정합성과 충돌하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철수가 ‘알고 있다’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 상황은 ‘지식에 대한 외재론’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트루템프(Mr. Truetemp)’ 사례⁷⁾나, ‘정당화에 대한 신빙성 이론’을 비판할 때 사용된 ‘예지적 천리안(Clairvoyance)’ 사례⁸⁾와 유사할 수도 있다. 트루템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두뇌에 심어진 칩에 의해, 정확한 현재의 기온에 대한 믿음이 불현듯 생성되는 사람이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증거나 이유 없이 느닷없이 생겨난 ‘현재 온도는 27도이다’라는 참인 믿음을 트루템프 씨가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지식에 관한 외재론자들이 요구하는 진리연관성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이를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천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과 충돌하는 믿음이, 실제로는 신빙성 있는 믿음 생성 과정인 ‘예지적 천리안’에 의해 생성된 경우이다. 그 예 중 하나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현재 대통령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는 정부는 모든 공식 매체들을 조작하여 대통령이 현재 워싱턴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고, 이를 의심할 어떤 이유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지적 천리안을 가진, 그러나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노먼(Norman)은 그 티비

7) Lehrer, K.(1990), *Theory of Knowledge*, Westview Press, pp. 163-164.

8) Bonjour, L.(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4-57.

보도를 보며 아무 다른 이유도 없이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뉴욕에 있다’고 믿게 된다. 노먼의 대통령의 현 위치에 관한 믿음은 비록 신빙성 있는 믿음의 생성과정에 의해 생산된 참인 믿음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직관적으로 그것이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점을 부정해야 함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예이다. 플란팅가의 애초 의도와는 반대로, 위 예에서의 철수의 정상적인 지각 믿음도, 진리연관성은 확보되었음에도 그렇게 믿지 말아야 할 내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트루템프나 노먼의 경우와 유사할 수 있다. 인식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를 대신할 제안을 고려함에 있어, 비록 의무의 개념은 포기하더라도 이러한 내적 정합성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예에서 언급된 앞의 두 가지 요소, 즉 (1) 믿음 생성의 비자발적 성격과 (2) 진리연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당화의 문제는 인식 정당성의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이미 잘 알려진 반론이다.⁹⁾ 우선 이병덕과 임일환의 입장이 이 두 반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도록 하자.

III. 의무론적 이해의 문제점

1. 인식적 의무 준수는 믿음의 진리연관성을 확보해 주는가?

현대 인식론의 표준적 이해 방식에 따르면, 인식 정당성이란 참인 믿음이 ‘얹,’ 즉 지식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추가적인 성질(이거나 성질들 중 하나)이다. 지식을 그저 참인 믿음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직관과 충돌한다는 것 이외의 답변은 찾기 어려운 듯하다. 대표적으로,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믿게 된 명제가 우연히 참인 명제였다면 우리는 인식 주체가 그 명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속칭 ‘찍어서 맞춘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는

9) 이병덕(2010), 앞의 논문, p. 34., 한상기, 앞의 논문, pp. 253-265.

우리의 직관만큼 분명한 것도 없다. 이는 존중되어야 할 직관이다. 비록 ‘참인 믿음을 최대한 확보하고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의 인식적 목표라고 하더라도, ‘안다’는 것은 그저 어떤 식으로든 얻게 된 최종 결과물의 상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까지도 고려된 채 수여되는 지위인 것이다. 따라서 ‘앎’은 ‘참’ 이상의 가치 평가가 개입된 규범적 개념이며 인식 정당성이란 바로 이 규범적 ‘ 좋음 ’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인식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란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인식적 의무’와 같은 개념을 설정하고, 그 의무의 위반이나 준수를 통해 믿음의 지위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은 인식적 의무의 위반이고, 따라서 그런 믿음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지식이 될 수도 없다는 식이다. 최소한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정당화 개념의 의무론적 이해’가 전개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의무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갈무리하는 데 있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한 이병덕의 입장은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우리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믿어야’(ought to believe)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믿지 말아야’[...]한다”¹⁰⁾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규범성이 의무론적 규범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식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를 진술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스럽다. 우리가 의무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주어진 믿음이 언제 혹은 어떤 조건하에서 인식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답변이지, 정당화된 믿음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당화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인식적 의무가 아니다. 의무론자의 관점에서라면 결국 이것도 우리의 인식적 의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0) 이병덕(2010), 앞의 논문, p. 32. 이병덕의 2013년 논문의 시작도 다음과 같다. “인식적 정당화는 규범적 개념이다. 인식적 정당화에 관한 의무론(epistemic deontology)에 따르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받아들여야 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규범성은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즉 인식의무에 어긋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인식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무론은 인식론의 정통적 견해이다.” 이병덕(2013), 앞의 논문, pp. 91-92.

만일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이해는 정당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예지적 천리안’의 예에서, ‘노면은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을 받아들였기에 인식론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과연 무엇으로 인해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쟁점일 경우, 이 답변은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병덕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정했기에, 정당화가 간주관적이며 사회적 것임을 보여 진리연관성을 가지도록 하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정당화된 믿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적 의무는 부정할 수 없이 자명한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병덕에 따를 때 우리에게 믿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정당화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인데, 이에 대한 이병덕의 답변은 정작 의무와는 무관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혼동은 그가 “‘진리-개연[진리연관]적이라고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개연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이 인식규범이라고 할 때¹¹⁾에도 드러난다. 우선 이병덕의 주장이, 이러한 인식규범을 지킨 결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인식규범이 ‘정당화된 믿음은 믿어야 한다’와 같은 층위의 또 다른 의무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혼동은 이병덕의 입장이 ‘진리개연적임’과 ‘(주관적으로) 진리개연적으로 판정됨’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병덕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을 믿지 않는 광적인 팬의 사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엘비스 매니아의 믿음은 참일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¹²⁾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 정당성에 관한 의무론자가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의무론자라면 엘비스 매니아가 인식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에, 즉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집하거나, 자신이 가진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¹³⁾

11) 이병덕(2010), 앞의 논문, p. 34.

12) 이병덕(2013), 앞의 논문, p. 103.

이 점에서는 임일환의 접근이 보다 적절하다. 그에게 인식 정당성에 관한 의무론적 이론이란 “임의의 믿음은 주체가 적절한 인식의무를 만족시킬 때 정당성을 갖는 이론”¹⁴⁾이다. 그렇다면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인식적 의무는 어떤 것일까? 임일환이 인용하고 있는 펠드만을 따라,¹⁵⁾ 인식론적 의무란 자신이 가진 증거에 부합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의무라고 이해해보자. 아마도 내용상으로는 이병덕 역시 이것이 인식적 의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 ‘증거에 부합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의무이건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이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믿음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의무론의 주장이라면, 이는 정당화가 의심스러운 전형적인 경우들, 즉 자신이 가진 증거에 반하는 믿음을 가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믿는 경우, 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인식 주체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갖게 된 참인 믿음에 대하여 (트루템프나 천리안의 경우처럼)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설명, 즉 왜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 믿음은 증거에 부합해 믿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이며 그 이유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덕도 의식하고 있듯이, 의무론에 대한 주요한 두 반론 중 하나인 진리연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우제의 효력을 신뢰하여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경우, 수정 구슬의 미래 예측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들여다보며 믿음을 생성하는 경우, 게티어 (Gettier) 경우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 영화촬영인지 모른 채 살인이 일어났

13) 이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들 중 한 명은, 그 논평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옳다면, 이병덕의 입장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인식정당성’이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새롭게,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진리연관적인 것으로) 정의된 인식정당성의 개념에 따라 정당화된 믿음은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이병덕의 입장은 인식정당성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게는 특정 믿음(참일 개연성이 높은 믿음, 믿으면 정당화될 믿음)을 믿어야 할 인식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14) 임일환, 앞의 논문, p. 167.

15) 위의 논문, p. 170 (각주 6).

다고 믿는 경우,¹⁶⁾ 그리고 벼락에 맞아 인식 체계가 외계와 단절된 채 고정되어 버린 플란팅가의 가상적인 암벽 등반가(inflexible rock climber)의 예¹⁷⁾를 비롯한 ‘고립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들이 모두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2절에서 예로 든 철수의 붉은 색 관련 믿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예들에 등장하는 인식 주체는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에 부합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따라서 인식론적 의무가 충족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진 믿음들은 자신의 믿음 체계 내에서는 정합적이지만 총체적으로 거짓이거나, 만일 그 중 한 두 믿음이 참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되어야 마땅한 믿음이 특별한 우연에 의해 참이 된 경우이다.¹⁸⁾ 따라서 최소한 진리연관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인식적 의무의 준수에 따라 그 믿음의 인식적 가치가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식의 인식적 의무의 준수가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병덕의 주장(혹은 그 주장에 담겨있는 정신)을 동조적으로 읽는다면, 그는 바로 이 문제의 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화를 간주관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면 ‘객관적 정당화’에 가까워져서, ‘주관적 정당화’가 당면하는 진리연관성의 결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자신의 입장이 의무론이라 주장하는 이병덕도 어찌되었건 의무를 따르는 것이 진리연관적이라는 점은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증거에 부합되는 것을 믿으라는 의무를 따를 때, 진리를 얻고 오류를 피한다는 인식의 목표가 달성되게 된다는 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한대로 이것은 의무론적 설명이 아니다. 위의 철수의 예를 생각해보자. 의무론의 입장에서라면 철수에게는 자신의 시각장에 등장한 붉은 물체에 대해, ‘그것은 붉지 않다’라는 믿음을 형성해야 할

16) 이주한(2011), “증거주의, 부합관계, 내재론적 직관,” 『철학적분석』 23, pp. 11-12.

17) Plantinga, *op. cit.*, p. 82.

18) 기우제나 수정 구슬의 예는 믿음 생성 과정의 문제가, 게이어 사례나 일부 ‘고립의 문제’ 경우에는 ‘환경적’ 문제가, 그리고 플란팅가의 예의 경우에는 (크게는 생성 과정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인지 체계의 ‘고장’이, 주어진 믿음이 진리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각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 이병덕(2010), 앞의 논문, pp. 45-51.

의무가 있다. 혹은 ‘그 소방차는 붉다’는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철수가 가진 증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병덕이라면 이런 경우, 그런 의무는 없다고 말해야 할 듯하다. 진리 연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병덕이 정당화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식 주체의 오관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식 주체의 고립이 초래하는, 그저 ‘나름대로 올바른,’ 그러나 실제로는 오류인 믿음 체계라면 그것을 인식적으로 의미 있는 체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철수의 인지 시스템의 오류는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철수 식의 믿음 형성은 인지적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이다. 그러나 인식적 의무에 진리연관성을 직접 도입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인식적 의무란 원래 모두 진리연관적임을 보이려는 시도이건, 아니면 진리연관성을 가진 의무만이 의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건, 하여간 의무론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설명에서 인식 정당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의무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진리연관성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발견과 지식에 의해 결국 믿음을 진리연관적 방식으로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내가 가진, 진리연관적이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최선의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지 알기 어렵다.

2. 믿음의 생성과 제거는 의지적으로 가능한가?

그렇다고 이병덕의 입장이 의도주의의 또 다른 난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또 다른 난점이란 믿음의 생산이 비자발적이라는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믿음을 생성하거나 소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임일환도 인정하고 있듯이 최소한 지각적 믿음이나 내성적 믿음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를 믿는 경우라도, 결론의 도출이 납득되는 순간 믿음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한다 해도 그 결과를 믿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만일 믿음에 대한 의지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믿거나 믿지 말아야 할 의무, 나아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따라오는 비난 등이 성립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대로 무엇인가가 나의 의무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Ought implies Can). 내가 나의 믿음을 통제할 수 없다면 믿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내게 부여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병덕 식의 의무론은 이 반론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각 믿음에 대해 정당화의 사회실천이 요구하는 것은, 지각믿음을 의지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를 의심할만한 적절한 반대증거가 제시될 경우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통제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²⁰⁾ 그러나 이러한 답변 역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믿음의 생성이 의지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될 수 없다면 철회 역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반대증거가 제시되면 우리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최소한 일정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비의지성 반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병덕의 답변은 비의지성 반론의 반론으로서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가? 제시된 반대증거의 효력에 설득되는 순간, 예를 들어 비서는 현장에 없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에 설득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서가 범인이라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 현상의 어느 부분에 의지의 통제가 개입할 수 있는가? 반대로, 반대증거의 효력에 납득하면서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는 마치 명제 ‘A’와 ‘A이면 B’를 받아들이고 전건긍정식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의지적으로 B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색하다. 이에 대하여 임일환은 믿음이 의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 상반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²¹⁾ 것은 지나친 것이라 한다. 그러나

20) 위의 논문, p. 42.

그렇더라도 믿음에 대한 의지적 개입의 가능성이 그가 원하는 대로 “희망적 믿음이나, 숙고에 의한 지식추구 과정처럼 적어도 일부의 믿음은 자유로운 행위라는 우리의 상식은 건전하다”²²⁾는 결론을 받아들여도 좋을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희망적 믿음을 예로 들어보자. 비행기 추락으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음을 믿고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음을 믿고 있는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실제로 어머니의 자유 의지가 이 믿음을 생성시켰고 또한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면서 마치 의지가 개입된 것처럼 보일만한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어쩌면 그런 경우들이 희망적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라고 간주되기에 더 빈번하고 적합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우선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증거를 가지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사고가 참혹하여 아들이라고 확인될 만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해보자. 이 경우라면 아들이 살아 있음을 믿자고 하는 결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인식 주체는 아직 증거의 합리성에 설득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낮은 확률에 기대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로 어머니는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믿자고 하는 자유 의지의 개입으로 이 믿음이 생겨나거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결정적인 증거에 납득되었음에도 희망적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 역시 의지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그 믿음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어머니로서는 아들이 죽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아들이 살아 있다는 모순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의지적으로 유지되는 듯 보이는 믿음에 대해 이런 설명들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면, 그저 몇몇 유

21) 임일환, 앞의 논문, p. 188.

22) 위의 논문, 같은 곳

형의 믿음들이 의지적 통제가 가능한 듯 보일 수 있다는 정도로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의 생성과 유지에 인식론적 의무를 부과해도 좋을 만큼 믿음에 대한 의지적 통제가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증거가 적절히 갖추어진다면 믿음이 생성되고, 그 증거가 변하면 믿음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 중에, 의지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혹은 생겨나지 않는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의무 위반’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반대 증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적 대응(즉, 철회)은, 믿음의 생성과 비교해, 보다 더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믿음은 의지의 관여 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물론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트루템프나 천리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반대증거의 대두가 아니라 증거 없음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혹은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인식 주체의 의지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던 믿음이다. 트루템프에게, ‘네가 의지했더라면 현재 기온은 27도라는 믿음은 사라졌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 인식 주체의 인식체계에 고장이 있다거나 병이 들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트루템프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그랬더라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인 한** 문제가 된 믿음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비정상이다. 물론 인식적 평가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그의 비정상임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²³⁾ 최소한 주어진 믿음을 거부해야 할 의무의 위반과 이에 따른 비난은 여기에서 거론될 수 없다. 따라서 이병덕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믿음의 생성이 아닌 반대증거 앞에서

23) 어쩌면 보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비정상이 아니어야 할 의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나, 여기서도 역시 우리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의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므로 의무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듯하다.

의 믿음의 철회를 이야기하더라도 의지적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와 상황이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비자발성으로 인해 그러한 철회가 우리의 의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3. 약한 의무 개념의 문제

임일환은 믿음의 비의지성 반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이 반론을 해결하는 것이 의무론적 이해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보다 약화시킨 의무 개념을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약한 형태의 의무론에서는 ‘p를 거부해야[즉, 반대 믿음이나 유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건만 만족되면 p를 믿는 것은 정당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그가 제안하는 약한 의미의 의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 우리의 지각 믿음은 대표적으로 비의지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을 믿자고 의지해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달리 믿자고 의지해도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믿어야 하는 의무건 믿지 말아야 하는 의무건 성립될 수가 없다. 하지만 약한 의무론은 이 상황을 ‘그 지각적 믿음을 거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보고자 하는 전략이다.²⁵⁾ 대상 앞에서 우리가 한 일,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은 것은, 비의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만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안 믿었을 텐데, 그런 점이 없어서 믿게 된 경우이며, 따라서 의지를 사용한 적극적 생성은 아닐지라도, 약한 의미로는 우리 의지의 ‘스캔’을 통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 만큼은 우리가 인식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로 보자는 것이다. “허용 가능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약한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는 믿음도 여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p에 대한 반대 증거나 약화 증거가 없는 한 [인식 주체는] 소극적 의무를 만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를 비난할 근거가

24) 위의 논문, p. 193.

25) 위의 논문, p. 191.

없기 때문이다.”²⁶⁾

이병덕은 임일환을 약한 긍정적 증거만 가지고 믿어도 인식적으로 허용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읽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약한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것은 정당성을 획득할만한 믿음이 아니고, 이 때 인식 주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유보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 하지만 임일환이 입장이 약한 의무론인 것은 약한 증거로 믿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믿게 된 믿음이 자신이 가진 반대 증거와 부딪치는 상황만 아니라면 일단 인식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기에 약한 의무론인 것이다. 즉 약한 의무란 적극적으로 상황에 적합한 믿음을 생성해야 하는 인식적 의무가 아니라, 반대 증거가 없을 때 생겨나는 믿음을 그대로 두는 인식적 의무인 것이다. 지각 믿음은 이미 지지하는 증거를 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즉 지각 경험이 곧 그 증거이므로) 이를 의심할 만한 다른 고려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prima facie*) 지각 경험이 제공하는 대로 믿어도 정당화될 것이고,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의무론적 설명이 약한 의무개념에 의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임일환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잘 고안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는 난점은, 이 약한 의무라는 것도 결국은 임일환이 피하고 싶었던, 믿음의 생성과 철회에 대해 강한 의지적 개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것 같다는 점이다. 우선 이것이 왜 약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강한 의무는 적극적 믿음 생성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것이 의지의 통제 하에 있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임일환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약한 의무일 때 우리는, 생성은 아니지만,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로 문제없는 믿음일 경우 그것이 생성되도록 허락(방치, 불개입)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여전히 우리가 인식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만일 문제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에 개입하여 의지적으로 그 생성을 막았을 것이다,’ 혹은 ‘이미 생성된 믿음을 검토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의지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

26) 위의 논문, p. 173.

27) 이병덕(2013), 앞의 논문, pp. 96-98.

것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의 ‘허용’은, 아무리 약한 의미로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만일 약한 의무론이 문제 있는 믿음의 생성 억제나 제거를 의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강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적 개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대로, 믿음의 제거 역시 믿음 생성의 적극적 의무에 비해 의지의 개입이 조금도 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믿음의 비의지성 반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면 굳이 약한 의무를 이용하여 비의지성 반론을 우회하려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의무론자가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 제거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각 믿음의 경우라면 그저 믿음 발생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고 주장할 수 있을까? 즉 허용 가능하기에 갖게 된 믿음이 인식적 의무를 준수한 믿음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제거가 나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건 아니건, 일방적인 허용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의무의 개념이 지나치게 약해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불현듯 생각지도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경우가 있다. 40여 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짝의 이름이라던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방의 벽지 무늬 같은 것이 마음에 떠오르고, ‘맞아, 그 아이 이름이 현우였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다. 딱히 이를 의심할만한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 믿음은 약한 의무론의 의무를 준수한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가? 비록 기억에 의한 믿음이 지각적 믿음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있지는 않기에 불현듯 떠오른 믿음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전한 인식 주체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의무가 이런 정도로 약화된다면, 이것이 과연 트루템프 같은 경우에 의무론자가 의도했던 적절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²⁸⁾ 애초에 의무론은 트루템프가 가진 현재 기온에 대한 참인 믿음은 정당화되거나 지식이 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직관을 설명해 주기 적합한 것으로 고려

28) 천리안을 가진 노만의 경우에는, 그가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다는 거짓 정보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대통령이 뉴욕에 있다는 참인 믿음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인식론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약한 의무론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되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믿었기에 인식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한 의무론에 따르면, 이 믿음에 대해 달리 생각할 반대 증거가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약한 인식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만일 트루템프의 ‘현재의 온도가 27도’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불현듯 옛집의 벽지 색깔에 대한 믿음(혹은 지각적 인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식으로 떠올랐고, 현재 온도가 27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어떤 이유도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약한 인식론적 의무를 만족시키는 정당화된 믿음으로 관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의무론자에게 그리 좋은 결과일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약한 의무론을 가지고도 믿음의 비자발성 반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임일환이 거부하는 스토입(M. Steup)과 같은 입장이 그 효과 면에서는 비자발성 반론을 피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스토입은 의무론적 정당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 노골적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믿는다’를 정당화의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한다.²⁹⁾ 믿음이 자발적인 경우라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자발적임’의 해석에 따라, 의무론을 곤혹스럽게 할 많은 반례들을 애초에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트루템프나 천리안의 경우는, 의무의 위반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 믿음들은 숙고나 최소한의 추론 조자도 거치지 않고 마음속에 갑작스레 나타난 것들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자발적 믿음의 종류로 우리의 지각적, 내성적 믿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스토입의 조건은 이러한 믿음들에 대해 정당화의 가능성을 부당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아니면 지식과 정당화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될 뿐이다. 흥미롭게도 소사(E. Sosa)의 동물적 지식(animal knowledge)과 반성적 지식(reflective knowledge)의 구분도 스토입과 유사한 정신에서 나온 대처 방식으로 볼 수 있다.³⁰⁾ 소사는 반성적 지식만이 ‘내재론적 속성을 포함하

29) 이병덕에 따르면 스토입의 정당화 조건은 ‘(i) S는 p를 자발적으로 믿는다 & (ii) S는 p를 거부해야 하는 인식의무가 없다’라고 한다. 이병덕(2013), 앞의 논문, p. 105.

30) Sosa, E.(1991), *Knowledge i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책에 실려 있는 논문들 중 특히 두 종류 지식의 구분과 정당화의 성격에 관해 주로 논의하고

는 정당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점에서 소사는 우리가 정당화라는 용어를 아예 폐기하지 않는 한, 정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의 성격을 외재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각적, 내성적 믿음과 관련될 수 있는 동물적 지식은 진리연관성과 같은 외재론적 기준을 포함한 '적절성(aptness)'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사의 반성적 지식이 스토입이 말하는 '자발적으로 믿음'과 같지 않기도 하거니와, 동물적 지식을 평가하는 소사의 '적절성' 기준처럼, 정당화 이외에도 비자발적 믿음이 지식이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전에 정당화의 자격을 박탈하는 스토입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IV. 인식론적 전문 개념으로서의 인식 정당성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병덕이나 임일환이 지지하는 인식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가 의무론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기존의 반론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의무론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의무론자들 역시 당연히 지식이 규범적인 개념이라는 직관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³¹⁾ 오류를 배제하면서 참인 믿음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의 인식적 목표로 상정하는 데에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의무론자와 필자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 규범성이 인식적 '의무'를 상정하고 그것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데에서 와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참인 믿음의 획득이라는 인식적 목표의 설정이 동의되었을 경우라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

있는 논문들은 "Reliabilism and Intellectual Virtue"(pp. 131-145), "Knowledge and Intellectual Virtue"(pp. 225-244)와 "Intellectual Virtue in Perspective"(pp. 270-293)이다.

31) "참 믿음이, 재채기나 심장 박동처럼 우리에게 발생하는 비의지적 해프닝에 불과하다면, 참인 믿음과 지식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임일환, 앞의 논문, p. 180.

미로서의 규범성이 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불분명해 보인다는 반론에 대해 의무론자들이야말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정당성이 의무론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숙고 없이 의무론적 입장이 여전히 정당화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인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게티어 이후의 수많은 논의들이 시사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최소한 일상적 직관의 지배를 받는 ‘정당화’와, 지식과의 연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인식 정당성’은 별개의 개념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인 인식론 논의에 근거하여 지식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JTB)’으로 이해될 당시의 ‘정당화’라는 개념은 인식론적 전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 개념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정당화의 가장 원초적인 직관은 결국 ‘이유(근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혹은 보다 강하게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³²⁾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윤리적 유비를 통해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직관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소 불필요하게 굴절된 것으로 보인다.³³⁾ 예를 들어 ‘정당화될 수 있는 지출’이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불복종’이라면 그런 행위를 한 윤리적 주체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적절한 이유나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식 주체에게도 바로 이런 의미의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게티어 반례는 바로 이러한 식의 정당화 개념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정당화된 참인 믿음’에 ‘앎’의 지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들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티어 유형의 반례의 하나에서,³⁴⁾ 철이는 실제로는 포드차를

32) 필자는 이 요구가 인식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적절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만일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전(前) 이론적’ 직관이 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33) 플란팅가는 데카르트나 로크의 논의에 들어있던 ‘인식적 의무’ 개념을 ‘믿음이 가져야 할 인식적으로 긍정적인 지위(정당화)’의 논의에 분명하게 등장시킨 이가 치죌(R. Chisholm)이며, 따라서 정칙한 분석의 형태로 제시된 ‘고전적인 치죌 식의 내재론(classical Chisholminian internalism)’은 의무론적 직관을 존중하는 입장들의 이론적 원천이 된다고 보고 있다. Plantinga, *op. cit.*, pp. 30-36.

34) 김도식이 각색한 레러(K. Lehrer)의 예이다. 김도식, 『현대영미인식론의 흐름』, 건국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안가진’씨의 거짓 언변에 속아, 그를 근거로 자신의 사무실의 한 직원은 포드차를 몬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믿음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철이가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믿어도 좋을 이유를 가졌기 때문이며, 이 이유가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안가진’씨의 행태나 진술을 의심할 이유를 달리 가지지 못한 철이로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분석은 그것이면 정당화로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게티어 반례의 핵심 요소인 ‘우연’이 개입한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이 철이 모르게 포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면 철이의 믿음은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이를 참인 믿음으로 바꾸어 JTB 조건을 충족시키게끔 만들어 준 것은 우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의 개입으로 JTB를 만족시키게 된 믿음에 우리는 ‘얕’의 지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게티어 반례가 나온 후 오랜 시간에 걸쳐 제기되었던 여러 대응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전통적 정당화 개념이 참인 믿음을 얻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둘째 어떤 종류의 인식적 우연(행운)의 개입은 얕의 지위를 박탈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게티어 반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이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정당성주의자’로 부를 수 있는 입장들로, JTB 분석은 유지한 채 게티어 반례에 포함된 우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4의 조건을 덧붙이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당성주의자’로 부를 수 있는 입장으로, 게티어 반례가 보여주는 것이 곧 정당성이 지식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J를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제안하는 입장들이다. 어느 쪽이건 기존 JTB 분석에서는 ‘이유(증거, 근거)를 갖는 것’ 정도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당성 조건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식을 위해서는 관련된 우연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성주의자’들은 추가되는 조건이 증거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그 결과 정당화 조건을 강화하고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기를 의도한다. 예를 들어 ‘무상쇄자(no defeater)’ 조건을 제4

조건으로 추가하여, ‘상쇄(파기)되지 않은 정당화’가 참인 믿음을 지식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³⁵⁾ ‘비정당성주의자’는 J를 대체하는 조건이 진리연관성을 확보하고 우연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론을 설계한다.³⁶⁾

이러한 관찰을 통해 보더라도 게티어 이전 정당성 개념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드러나는 듯하다. 비교적 분명하게 우리가 직관에 호소하여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앎’과 ‘모름,’ ‘지식’과 ‘지식이 아닌 것’의 구별 문제이다. 지식이 정당화(그것도 의무론적 의미의)를 요구하는 지 아닌지는 지식에 관한 우리의 직관의 일부가 아니었다. 정당화로 불렀던 지식의 제3의 조건, 나아가 게티어 이후 고려하게 된 제4의 조건까지도 포함하여, 참인 믿음을 지식으로 만드는 조건은, 필요에 따라 구성되고 조탁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작위적이며 복잡한 조건일 수 있다. 따라서 인식론적 문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화 개념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정당화라고 불렀던 그 성질의 기능과 역할, 그것이 요청되었던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 정당성 개념’은 그 정당화의 대상인 믿음의 참과 본질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당성 개념과는 특징적으로 구분된다”는 홍병선의 서술이나³⁷⁾ “결국 인식적 정당화란 참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그 자체로서의 본래적 가치는 없”으며 “정당화는 우연한 경우로 혹은 행운에 의해 참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최순옥의 서술³⁸⁾도 바로 이러한 사유의 결과로 보인다. 게티어 반례가 주는 교훈은 관습적인 사고에서 ‘정당화’라고 불려왔던 바로 그 성질이 과연 일상적 정당화와 유사한 것인지 재고하라는 요청인 것이다.

‘참인 믿음을 최대한 많이 가지면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과 같은 인

35) 레러의 undefeated justification, 스웨인(M. Swain)의 infeasible justification이 그 예들이다.

36) 암스트롱(D. Armstrong)의 ‘지식에 관한 신빙성 있는 지표이론(reliable indicator theory of knowledge)’이 한 예이다.

37) 홍병선(2006), “인식 정당성 개념과 오류가능성의 문제,” 『철학탐구』 제20집, p. 215.

38) 최순옥, 앞의 글, p. 272.

식적 목표가 상정되고, 이에 따르는 이론적 필요에 의해 상정된 다분히 인공적이고, 다소 복잡하거나 복합적일 수도 있는 성질인 인식 정당성은 일상적 정당화 개념으로부터 빌려와야 할 것이 없으므로 이 전문적 개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관한 직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식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직관이 의무론적 이해를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지식의 규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의 규범성에 대한 고려는 인식 정당성에 평가적 측면이 개입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좋은’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만 있으면 존중될 수 있다. 윤리적 측면과의 연계를 통해 인식적 ‘의무’를 상정하는 일은 인식론적 개념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V. 믿음은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 복잡한 ‘인식 정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속에는 결국 진리연관성의 확보 및 우연성의 제거에 관련된 장치들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야 할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이 진리연관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될 수 없음은 이제까지 논의가 보여주는 바이다. 그러나 의무론적 접근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이, 주어진 믿음이 지식이 되지 못하는 데 개입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우연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는 사실이 놓여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트루템프의 경우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에 관한 우리의 판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인식 정당성의 한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자. 특히 필자는 그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데 있어 의무라는 개념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려 한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무론자들의 의무의 준수나 위반을 통해 평가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식 주체라는 점이다.³⁹⁾ 즉, “지각 믿음들이 비의지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형성된 이후에 이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주체의 의지적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⁴⁰⁾ 와 같은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의무론자들은 주어진 개별 믿음이 의무를 준수한 결과로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인식 주체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싶은 것이다. 비록 앞서 언급한대로 믿음을 철회하는 것이 의무론자들의 생각처럼 의지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인식 주체는 적절하게 증거들에 주목하고 그 영향력과 귀결을 평가함으로써, 정상적일 경우 어떤 믿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다. 이는 마치 정보들을 재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깊은 계곡 위에 걸린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아래를 내려 보지 않거나, 나보다 먼저 이미 수백 명이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두려움의 제거가 매번 성공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비난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의지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하여간 성공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의무론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이 인식 주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두려움을 의지적으로 통제할 경우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최종적인 성공이나 실패라기보다는 인식 주체의 노력인 것 같다. 마찬가지로 의무론자들이 믿음 생성과 제거의 비자발성에 맞서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인식적 의무란 결국,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식 주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노력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의무의 약점은 나쁜 결과에도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9) 이 구별은 김기현이 지적한 바 있다. Kim, Kihyeon(1994),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and Doxastic Voluntarism,” *Analysis* 54. 여기서 김기현은 인식적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건 일단 생겨난 믿음을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의무”로 이해하고(p. 283) 이러한 의무론적 용어가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인식 주체의] 숙고(p. 284)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40) 이병덕 (2013), “약한 인식적 의무론과 믿음의 비의지성 문제,” 『철학』 114집, p. 104.

예를 들어, 엘비스의 생존을 믿거나 자식의 생존을 믿는 어머니를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의무론자는 이들을 노력했으므로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보고 싶지도, 어쩔 수 없으므로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람으로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⁴¹⁾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가 명제 p 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p 를 믿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믿음 생성의 비자발성으로 인해 무리이고, p 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끔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무론의 취지에 맞지 않을 만큼 약하다. 의무론자들이 믿음의 생성과 유지에 관련된 인식 주체의 수행(performance), 특히 증거와 관련하여 인식 주체가 보여주는 행태를 평가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식 주체가 믿음의 간접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즉 그런 의무를 상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해서는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p 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혹은 적절한) 상황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식 주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한 방법인 것 같다. 믿음의 제거 혹은 소멸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생된 믿음 p 가 참일 수 없는 증거들에 노출된다면 이때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정상인(적절한)데, 인식 주체가 그런 정상적인 성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무론자들도 결국 우리가 그러한 인식 주체가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만일 지식을 위해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의무’ 개념에 기대지 않고, 문제를 인식 주체의 내적 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치환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서로 다른 국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흔히 믿음이라 부르는 우리의 명제적 태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무엇이 되었건 어떤 명제적 내용에 대해 ‘그것을 안

41) 임일환, 앞의 논문, pp. 205-206. 임일환은 여기서 일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간주되는 것에도 (예를 들어 개인의 ‘고장’이나 인지적 결함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러지 않았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논변한다.

다'라는 인식적 지위가 부여되기 위해 필요한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일단은 그것을 부르는 말이 믿음이라고 해보자. 이러한 심리 상태는 지각이나 기억, 추론 등 믿음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구조의 작동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믿음은 생성과 동시에 인식 주체의 믿음 체계의 일원이 되면서 다른 믿음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지위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생성된 믿음은 기존의 어떤 믿음을 지지하거나 보완하거나 의심하게 할 수 있다. 믿음을 어떤 믿음 생성 구조의 귀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을 어떤 믿음 체계의 일원으로서 보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S가 p를 믿고 있음'이라는 하나의 현상의 구별될 수 있는 두 국면이라 볼 수 있다. 편의상 전자를 믿음의 '생성 국면,' 후자를 믿음의 '유지 국면'이라고 불려보자. 이제 진리연관성의 확보와 우연의 배제라는 기준으로 주어진 믿음을 평가한다면, 이 두 국면은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성된 믿음이 진리연관성을 가진 것인지(마치 정당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과정이론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진리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빙성 없는 믿음 생성 과정이 생성해 낸 믿음이 매우 낮은 확률로, 행운에 의해 참이 된 경우, 이를 우연인 것으로 평가하여 배제할 수 있다. 후자인 믿음의 유지 국면에서는, 생성된 믿음이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여타 믿음들이나 증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평가하여 역시 우연의 배제 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다.⁴²⁾ 필자의 생각으로는 참인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1) 그 생성의 국면을 평가해 보았을 때, 그것이 참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과, (2) 그 유지의 국면을 평가해 보았을 때, 역시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연 혹은 인식 주체의 비정상 덕분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가 낮은 확률의 우연을 배제한다면 후자는 믿음들 간의 정합 여부를 따져봄으로서 소위 '독단에 의한 우연'을 배제할 수 있다. 이 두 국면에서 모

42) 믿음의 유지 국면에 대한 평가는 마치 정합론에서의 믿음을 평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때 믿음들 간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가 내재론적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두 문제가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며 이는 당연히 믿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미한다.⁴³⁾

물론 이 두 조건, 특히 소위 유지 국면에 대한 평가 내용은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단순히 진리연관성만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두 국면을 나누는 의의는 반감될 것이고, 이런 입장은 단순한 신빙성 이론과 유사해질 것이며, 따라서 신빙성 이론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기존의 반례들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의무론자가 인식 정당성의 이해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가지고 있는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 혹은 지지하는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식적 잘못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필자의 제안은 유지 국면에서 이를 ‘좋지 않은’ 믿음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⁴⁴⁾ 이를 위해 현재 필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충분하나마 다음 정도이다. 인식 체계의 내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참 거짓 외에도 여타 믿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맞음과 안 맞음도 평가할 수 있다. ‘잘 맞음’은 정합론 혹은 증거론의 통찰을 빌려오되 이를 외재론적 관점에서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나면 인식 주체에 대하여, 관련된 하위 영역별로, ‘잘 맞는 믿음’만을 유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정상인 인식 주체로 보고,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인식 주체의 믿음 체계 속에 유지되고 있는 믿음을 잘 유지되고 있는 믿음으로 보자는 것이다.⁴⁵⁾

43) 이 두 조건의 만족을 ‘인식 정당성’으로 부를지 여부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이 두 조건이 참인 믿음에 더해지면 지식을 만들어 주는 성질의 모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외에도 여전히 게티어 해결책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도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44) 또 하나, 예를 들어, 악령의 세계에 사는 매우 주의 깊고 꼼꼼한 인식 주체가 가진 인식적 장점, 즉 악마의 속임이라는 자신도 모르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비록 모든 믿음을 이유와 증거에 근거해서 믿지만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인식 주체의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촬영인줄 모르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45) 이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이 절에서의 서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이 지적은 물론 정당하다. 일종의 스케치에 머문 이 절의 서술만으로는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제안의 어렵פות한 모습밖에는 그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그러한 ‘절충적 노력’의 방향과 가능성만이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애초 논문 구성상의 목표였고, 본격적인 이론의 내용은 차후 보다 정리

VI. 나가는 말을 대신하여

비록 스케치에 가까운 제안이기에 그럴수록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적용 결과는 쉽게 예측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들에 대하여 이러한 제안이 애초 의도에 맞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엘비스의 생존을 믿고 있는 광신자의 믿음은 신빙성 있는 믿음 생성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진리연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성 국면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임일환의 지적대로⁴⁶⁾ 그가 그의 믿음 중에 엘비스의 사망을 인정하는 증거들이나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충돌하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지 국면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된다. 아들이 생존해있다는 어머니의 믿음도 마찬가지이다. 의무론적 접근에서는 이런 믿음이 ‘어쩔 수 없는 믿음’인지의 여부, 그렇다면 그들에게 달리 믿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쟁점이 되겠지만, 필자의 제안에서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믿음은 생성과 유지에 문제가 있어, 정말로 만에 하나 아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아들을 잠적시키기 위한 음모였다고 해보자)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우제의 경우, 그의 믿음 체계가 ‘(기우제를 지냈으니) 곧 비가 올 것이다’와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합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유지 국면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기우제와 비가 오는 것 사이에 사실상의 신빙성 있는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러한 암묵적인 추론으로 생겨난 믿음은 진리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우연히 곧 비가 와서 그의 믿음이 참이 되더라

된 사유를 거쳐 제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여기서 시도하는 것은 ‘의무론과 외재론의 결합’은 아니며, ‘생성에 대해서는 외재론을, 유지에 대해서는 내재론’을 적용하려는 것도 아니다. 진리연관성을 기준으로 한 믿음 생성 국면의 평가나, 가칭 ‘잘 맞음’을 기준으로 한 믿음 유지 국면의 평가는 모두 외재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절충적 노력’일 수 있는 것은, 인식정당화와 관련된 포기될 수 없는 의무론적 측면(‘인식주체는 ~ 해야 했다’)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46) 임일환, 앞의 논문, P. 206.

도 이 믿음은 지식이 될 수 없고, 이는 이 상황(그는 곧 비가 올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상이 붉지 않다는 철수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유지 국면의 장점은 존중해 줄 수 있다 하여도, 진리연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의 추론의 결과인 그 믿음은, 생성 국면의 문제로 인해 지식에 필요한 그 가치 평가적 속성(인식 정당성)은 가지지 못한 믿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매트릭스 속의 인간, 통속의 두뇌, 혹은 악령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이 가진, 비록 내적으로는 정합적이나 총체적으로 거짓인 믿음들도 같은 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 제안은 트루템프나 친리안의 예에도 직관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과를 낳는다. 비록 이 믿음들이 각각 신빙성 있는 믿음 생성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이들이 인식 주체가 이 믿음들을 지지해 줄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면, 바로 그 이유로 지식이 될 수 있는 유지 국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믿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트루템프는 외기 온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의 철수의 정상적인 빨강 믿음에 대해서도, 그는 그 순간 ‘버스가 빨강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바로 유지 국면의 문제 때문이다.

필자의 제안은 진리연관성이 관계되는 영역과 의무론자들이 중시하는 직관이 작동하는 영역이 각기 다름을 믿음의 국면들을 이용하여 구분해 줌으로써, 의무의 개념 없이, 나아가 내재론을 도입함 없이, 실질적으로는 의무론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신빙성론자들이나 외재론자들이 양보해야 할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식 정당성’ 이해에 관한 하나의 발전된 외재론적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도식 (2004), 『현대영미인식론의 흐름』,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병덕 (2013), “약한 인식적 의무론과 믿음의 비의지성 문제,” 『철학』 114집, pp. 91-115, 한국철학회
- _____ (2010), “인식적 정당화와 의무론적 규범성,” 『철학』 102집, pp. 31-54, 한국철학회
- 이주한 (2011), “증거주의, 부합관계, 내재론적 직관,” 철학적분석 23, pp. 1-26, 한국분석철학회
- 임일환 (2012),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두 가지 의무론적 이해와 비의지성 반론,” 『철학연구』 제46집, pp. 165-210,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최순옥 (2002), “인식적 정당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철학연구』 제 81집, pp. 269-287, 대한철학회
- 한상기 (1998),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의무론적 개념,” 『철학』 56집, pp. 241-273, 한국철학회
- 홍병선 (2006), “인식정당성 개념과 오류가능성의 문제,” 『철학탐구』 제20집, pp. 211-233,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Bonjour, L. (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Kihyeon (1994),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and Doxastic Voluntarism,” *Analysis* 54. 4, pp. 282-284
- Lehrer, K. (1990), *Theory of Knowledge*, Westview Press
- Plantinga, A. (1993), *Warrant: The Current Debate*, Oxford University Press
- Sosa, E. (1991), *Knowledge i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On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A Criticism and an Alternative

Lee, Hae-Wan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recently proposed, duty-based understandings on epistemic justification, one by Beong-Deok Lee and the other by Il-Hwan Rim. Having difficulty in securing truth-conduciveness has been the major weakness of such deontological conceptions of justification. The fact that beliefs are formed involuntarily also casts a serious doubt on the concepts of epistemic duty. I argue that, unfortunately, those two new suggestions by Lee and by Rim still cannot live up to their billings by being susceptible to these already known attacks. Lee's attempt to directly connect duty to truth-conduciveness fails, and Rim's dependence on the concept of weak epistemic duty cannot circumvent the criticism of involuntarism, as he has intended.

On the basis of this review, I propose a new way to understand epistemic justification. It is my contention that the concept of epistemic justification may be so technical that it is not guided by the intuition of justification (as there is none) but rather constructed artificially in accordance with what we think is needed for a true belief to become knowledge. What we need is truth conduciveness and, if a true belief is acquired by chance and/or maintained by chance, ways to get rid of relevant accidentality are involved. Thus I think that a belief should be evaluated as being good in the phase of both its acquisition and its

maintenance in order to see if it qualifies as knowledge. A good belief in its acquisition phase may well be a belief produced by a reliable belief-forming process so that we can secure the truth-conduciveness. I suggest that a good belief in the maintenance phase can also be evaluated in an externalist's perspective so that we can eliminate the involvement of a kind of accidentality, which in turn is a way to capture what deontologists want to hold as being epistemically important. The difference is that my proposal does not rely on the problematic concept of epistemic duty.

Keywords: Epistemology, theory of justification, epistemic justification, epistemic duty, involuntarism,
Byeong-Deok Lee, Il-Hwan Rim

